

심사보고서

2015. 12. 14(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11. 18. 성북구청장(의안번호 132호)

나. 회부일자 : 2015. 11. 19.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5. 11. 23.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후속 조치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며 동 단위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며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로 개정
- 상위 관계 법령 변경(안 제1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2015. 7. 1, 이하 “법”)
-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기능 등을 명시하여 운영 강화(안 제6조, 제7조)
-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명시하여 운영 강화(안 제8조)
-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 분과장의 직무(안 제11조)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안 제12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임기 2년, 연임 2회
 - 동 협의체 : 임기 2년, 연임 가능
-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규정(안 제15조)
 - 대표협의체(연 2회 이상), 실무협의체(연 4회 이상), 동 협의체(연 6회 이상), 실무분과(연 6회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규설)

-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1일 시행으로, 동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항으로서,

-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 안제6조, 제7조에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기능을 명시하여 운영을강화하고,
 - 안제8조에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명시하였으며,
 - 안제9조에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안제15조에는 각 협의체, 실무분과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규정을 명시하고
 - 안제18조, 제19조에서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예산조치 : 없음
- 입법예고 : 2015. 9. 24 ~ 10.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2
----------	-----------

발의
년월일 2015년 11월 18일
발의자 성북구청장

1. 수정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용어 권고사항에 따르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4조 3항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2항에 따라” 로 수정
- 제12조 1항중 “2회에 한하여” 를 “두 차례만” 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3항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12조 1항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생략) 1. ~ 7(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u>제2항의 규정에</u> <u>따른</u>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p>	<p>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1. ~ 7(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u>제2항에 따라</u> ----- ----- -----</p>
<p>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 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u>2회에 한</u> <u>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 간으로 한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 <u>두 차례만</u> -----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